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존중을 통해 국제적 우호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2018. 10. 30. 제 2 차 세계대전 중 구 일본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 [현·일본제철주식회사(現·日本製鉄株式会社)]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 억원씩의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왔던 교류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대법원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된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 4. 27. 판결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본제국에 의한 「불법이고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원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처리된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세기(一世紀)에 걸친 기간의 큰 틀 아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역사가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학자로부터도 이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異論)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특정한

역사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해석의 측면이나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13 년간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교섭의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국제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후 양국의 우호관계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 조약은 각각의 입장이나 기대에 입각하면서도 쌍방 당사국이 상호 양보하는 노력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도 그러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동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원판결에 기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따라서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한국의 국내문제이므로 한국정부의 책임 아래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한국정부·사법당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정신에 기초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로서 상호 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합니다.

2019 년 12 월 23 일

한국측

고영주(변호사, 전서울남부지검검사장) 박인환(변호사, 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상임대표)

석동현(변호사, 전부산지검검사장) 고영일(변호사) 장재원(변호사) 정선미(변호사)

김기수(참여자간사, 변호사,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공동대표) 이우연(참여지식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측

타카이케 카즈히코(참여자대표, 변호사) 아라키 다오사무(변호사)오자키 유키히로(변호사,

전쿠시로지검검사장)카시야에 마코토(변호사) 가쓰마타 유키히로 (변호사)
다나카 요시토 (변호사) 다나베 요시히코(변호사)도이 켄조(변호사)
나카시마 시게키(변호사,전후쿠오카현 변호사회부회장)
하라 요우지(변호사) 마수다 지로오(변호사) 마츠모토 토오이치(변호사)
미츠키도 나오마사 (변호사) 모리 토오이치(변호사) 요시카와 타카유키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참여자간사,변호사,전일본변호사회인권위원회부위원장)
니시오카 츠토무(참여지식인,레이타쿠대학객인교수)